

의안번호	2126673
의 퇴 인	이자스민 의원
회 답 일	2024.5.28.
추계번호	24B0266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제13항 및 제14항 (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) 신설	• 방송사업자는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.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13항) • 제13항에 따른 외국어 자막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1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9조제13항 및 제14항 (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방송사업자의 외국어 자막 등 제공 비용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69조제13항 신설)
-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중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¹⁾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자막 제작 경비 등의 지원을 위한

1)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

제24조(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정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어 자막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외국어 자막 등의 제공 대상 프로그램의 종류, 자막 제공 대상이 되는 외국어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향후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

-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방송사업자들이 외국어 및 한국어 자막 제작 등의 단가 정보를 각 방송사의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어, 주요 방송사업자의 자막 제작에 소요되는 평균 단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에산정 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제25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